
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603
----------	-----

2025. 10. 14.
경제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5. 9. 30. 강남구청장(세무관리과)

나. 상정의결

- 제33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(2025. 10. 14.)
“ 원안가결 ”

2. 제안이유(제안설명 : 기획경제국장 심혁보)

지방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2026년도 강남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출연 동의를 얻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출연기관 : 한국지방세연구원

나. 출연근거(사유) :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

다. 사업내용 :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및 세제 개편,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한 지방세발전기금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

라. 출연예산 : 56,347천원

마. 산출기초 : 2024년도 보통세 563,471,484천원의 1만분의 1.0

※ 연구원 혁신방안 후속조치로 법정 출연비율 인하

(1만분의 1.2 → 1만분의 1.0), 관련 법령 ' 25년 말 개정 예정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세기본법」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

나. 예산조치 : 논의 필요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5. 검토보고(전문위원 : 이주현)

가. 출연 취지 및 배경

○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설립·운영

- 한국지방세연구원은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1조¹⁾에 따라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·운영하는 법인임.

<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주요 업무 >

- 사업대상: 전국 지방자치단체
- 사업내용: -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,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·평가²⁾
- 지방세의 연구·홍보
-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
-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등

1) 지방세기본법

제151조(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·운영) ①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·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(이하 “지방세연구원”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

2) 지방세특례제한법

제4조(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)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(이 법 또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)을 하려면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,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·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.

-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은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제 94조제3항³⁾에 근거하여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의 우선 사용순위에 따른 것이고, 그 출연을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.⁴⁾

나. 검토 내용

○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

- 우선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이 이루어지는데,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음.

2026년도 강남구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액 (서울특별시 강남구, 2023. 12. 기준)

[2024년도 결산] (단위: 천원)

	보통세	563,471,484	Ⓐ 563,471,484
	재산세	456,762,256	
	등록면허세	95,906,318	
	지방소비세	5,853,840	
	지난연도수입	4,949,068	
법정 비율	Ⓑ 1만분의 1.0	Ⓐ × Ⓑ = 56,347	

○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규모

3) 지방세기본법

제94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)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.

1.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

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,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·평가
- 지방세의 연구·홍보
-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
-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

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.

4)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-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**출연**을 할 수 있다.
-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**출연**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**의결**을 얻어야 한다.

- 강남구는 매년 적립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이행에 사용하였음.

< 서울특별시 강남구 최근 5개년 세입 결산 현황 >

(단위:백만원)

년 도	2020	2021	2022	2023	2024
금 액	1,681,402	1,665,507	1,652,678	1,611,384	1,606,402

< 서울특별시 강남구 최근 5개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현황 >

(단위:천원)

년 도	2022	2023	2024	2025	2026
금 액	56,836	66,668	72,551	65,834	56,347

○ 한국지방세연구원 주요 사업 현황

-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주요 사업은 지방세 교육, 지방세 쟁송사무 지원, 지방세법령제공시스템 운영, 시가 표준액 조사 및 연구 등이며, 그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제공한 실적을 정리한 현황은 [붙임 1]과 같음.

[붙임 1] 한국지방세연구원 주요 사업 현황 및 강남구 지원 실적

다. 종합 의견

○ 출연 기준 하향세

-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비율은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되었고, 이는 차츰 세입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.

○ 향후 과제

- 최근 강남구가 의뢰하는 연구과제 수행이 늘어난 것은 상호 간에 바람직한 변화라고 보임. 앞으로도 지방세연구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활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2024년부터 의무화 된 경영공시에도 관심을 기울이면 좋을 것으로 생각됨.

※ 관계 법령

지방재정법 [시행 2025. 4. 1.] [법률 제20871호]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**출연**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**출연**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지방세기본법 [시행 2025. 1. 1.] [법률 제20629호]

제151조(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·운영) ①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·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(이하 “지방세연구원”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

- ⑥ 지방세연구원의 설립·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,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「민법」 제32조와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(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)을 준용한다.

제152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·운용)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·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·운용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수입결산액(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,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)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

-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, 용도,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지방세기본법 시행령 [시행 2025. 1. 1.] [대통령령 제35175호]

제94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)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”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.

- 1. 1만분의 1.2
- 2. 1만분의 0.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

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.

- 1.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

2.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,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·평가
 3. 지방세의 연구·홍보
 4.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
 5.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
-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.
 -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.
 -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.

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

306 - 01 출연금 (p.103)

1.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
 - 한국지방행정연구원, 한국지역정보개발원, 한국지역진흥재단, 한국지방세연구원, 지방공기업평가원 등 출연금

※ 참고 자료

[붙임 1] 한국지방세연구원 주요 사업 현황 및 강남구 지원 실적

한국지방세연구원 사업 현황

지방세 교육

- 지방세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세 전문교육 실시
 - 맞춤형 전문교육, 상시학습용 e러닝 교육, 강의품질 제고를 위한 전임교수제
 - 2025년 재산세·취득세 등 34개 교육과정, 82회 운영, 8,790명 교육 계획
 -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사항, 적용요령, 판례 등 망라한 교육교재 발간
- 강남구 세무직 공무원 교육 이수(최근 5년) : 357명

지방세 쟁송사무 지원

-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불복사건 자문 등 쟁송사무 지원
 - 자치단체의 지방세 불복사건에 대한 대응논리 등 자문서비스 제공
 - 자치단체의 지방세 불복사건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소송실무 교육 실시
 - 주요 지방세 판례를 분석한 간행물 발간
- 강남구 쟁송사무 지원(최근 5년) : 지방세불복사건 5건(세액 257억원)

지방세법령제공시스템 운영

- 지방세 법령정보DB구축 등 주요법령 정보 제공
 - 지방세 관련 최신 판례 등 자료 확보 및 시스템 운영
 - * 대법원·조세심판원 등 법령정보 발생기관 자료 신속수집·제공
 - 지방세 공무원의 업무효율 향상을 위한 실무자료·커뮤니티 제공
 - 지방세 전문 소식지 「지방세 알립e」 발간

〈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운영 〉

(단위 : 건, 2025.7월말 기준)

구 분	합계	헌법재판소 대법원판례	조세심판원 감사원결정례	법제처 행안부유권해석	고시 등	지방세 상담	질의응답	실무자료 등
정보 제공	135,971	30,485	26,872	5,370	1,165	16,050	44,596	11,433

시가표준액 조사 및 연구

□ 시가표준액 가격 조사 및 연구, 지방자치단체 과표업무 지원

-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,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·산정
- 시가표준액 산정 업무요령 작성 및 제도개선 워크숍 운영

□ 강남구 미공시 공동주택 가격 산정(최근 3년) : 127동

⇒ 2023년부터 미공시 공동주택 가격산정 수수료 면제로 1천만원 예산절감

연구수행 현황 및 주요 연구과제

□ 연구과제 수행

- 지방세수 확충, 지방세 관련 법제, 지방세 과세표준 제도, 세외수입 제도 관련 기초이론 등 연구
- 정기 수요조사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실현 관심도가 높은 수시 요구사항을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연구 수행

□ 강남구 의뢰 연구과제 수행 내역(최근 5년)

연번	의뢰내역			채택결과	
	연도	기관	연구과제(제목)	연구보고서(제목)	연구번호
1	2021	서울 강남구	구세감면조례 신설에 따른 법률검토 및 내·외부 영향	구세감면조례 신설에 따른 법률검토 및 내·외부 영향	수시과제 21-06
2	2024	서울 강남구	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개정에 대한 타당성 검토	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개정에 대한 타당성 검토	제도개선
3	2025	서울 강남구	서울시 자치구 재정균형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	시세의 구세 이양 방안: 서울시를 중심으로	정책위탁
4	2025	서울 강남구	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감면 조항 신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 (고령자 소유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관한 사항)	착수 예정	
5	2025	서울 강남구	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감면 조항 신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 (2자녀 이상 가구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관한 사항)	착수 예정	

6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생략”

7. 토론 요지: “없음”

8. 심사 결과 : “원안가결”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“없음”

10. 기타 사항 : “없음”

붙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